

교황청 인준(RECOGNITIO)을 위해 미국주교회의에 의해 승인된

사제와 부제에 의한 미성년자 성적학대 주장 신고 처리에 관한 교구/동방교구 정책들을 위한 필수 규범

2002년 12월 8일 교황청 주교성에 의해 1차 인준

서문

2002년 6월 14일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는 「어린이 청소년 보호헌장」을 승인하였다. 보호헌장은 사제, 부제, 그리고 그 외 교회 직원들 (유급 직원과 자원봉사자 포함)에 의해 저질러진 미성년자 성적학대 사건을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처리하려는 교회의 공약을 표현하고 있다. 미국 주교들은 교회 내에서 미성년자로서 교역자, 직원, 혹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성적학대를 받은 이들을, 사건 발생 시기에 관계없이, 접촉 연락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들은 관련된 개개인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 한도 내에서 미성년자 성적학대 사건에 대해 공동체와 본당 신자들에게 최대한 공개하기로 진솔하였다. 그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사목적 그리고 정신적 배려와 정서적 복지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주교들은 미성년자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학부모와 사법당국, 교육자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교들은 신학교 지원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살필 책임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약속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의 각 교구/동방교구가 미성년자 성적학대 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는 교구 신부, 수도회 신부 그리고 부제들에 의한 성적학대의 주장 신고 처리를 위한 이러한 규범들을 교령으로서 포고하게 되었다.¹ 본 규범은 보편 교회법을 보충하는 것이며, 보편 교회법에 의거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미성년자 성적학대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해오고 있으며, 가해자를 합당한 형벌로 처벌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처분도 제외하지 않는다.

본 규범의 목적이 정의하는 성적학대(sexual abuse)는 교회법전(CIC), 제 1395조 2항, 그리고 동방 교회법전(CCEO), 제 1453조 1항에 따라 십계명 중 제 6계명에 위배되는 성직자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범해진 범죄 행위를 포함한다. (*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 제 4 조 1항)²

규범

1. 본 필수 규범은 교황청에 의해 인준(*recognitio*) 승인되었으며, 2006년 5월 15일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의 실행에 따라 공식적으로 공포됨으로써 미국 내 모든 교구/동방교구를 위한 개별법으로서 그 효력을 갖는다.³
2. 각 교구/동방교구는 사제, 부제, 그리고 그 외 교회 직원들에 의한 미성년자 성적학대에 대한 명문화된 정책을 갖추어야 한다. 이 정책은 교회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특히 교회법전(CIC), 제 1717-1719조, 그리고 동방 교회법전(CCEO), 제 1468-1470조) 충족하고 그 실행을 위해 취해야 할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본 규범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각 교구는 이 정책을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정책이 수정될 경우 수정된 후 3개월 내에 그 수정본 또한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3. 각 교구/동방교구는 그들 자신이 미성년자 때 사제나 부제에 의해 성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한 즉각적인 사목적 배려를 제공하는데 조정을 할 수 있는 적격자를 두어야 한다.
4. 각 교구/동방교구는 교구장/동방교구장 주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비공개 자문역을 담당하는 평가 위원회(review board)를 두어야 한다. 평가 위원회의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A. 교구장 주교/동방주교가 미성년자 성적학대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성직자가 직무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 결정하는데 조언을 한다;
 - B. 미성년자 성적학대 처리에 관한 교구/동방교구 정책들을 재검토 한다; 그리고
 - C. 과거의 상황과 예측되는 상황을 검토하여, 사건들과 관련한 전반에 대해 조언을 제공

할 수 있다.

5. 교구장/동방교구장 주교에 의해 설립되는 평가 위원회는 최소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사려 판단이 깊고 정직 성실하며 교회와 친교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과반수 위원은 교구의 고용인이 아닌 평신도로 하되, 최소한 1명은 해당 교구 내에서 경험이 많고 존경을 받는 사제로 하고, 미성년자 성적학대 치료 전문가 1명도 최소한 포함시켜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장될 수 있다. 검찰관(Promoter of Justice)이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사제나 부제에 의한 미성년자 성적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교회법에 의한 예비 조사가 시작되어 즉시 그리고 객관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교회법전(CIC), 제 1717조; 동방 교회법전(CCEO), 제 1468조). **수사 기간 동안 피고소인에게는 무죄의 추정성(presumption of innocence)을 허용해야 하며 그의 명예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 피고소인에게 또한 그에게 사법 변호인과 교회법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하며, 수사 결과를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학대 발생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엔 교황청 신앙교리성(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Faith)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주교는 교회법전(CIC), 제 1722조 또는 동방 교회법전(CCEO), 제 1473조에 명시된 예방조치를 취한다 – 즉, 사건절차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고소인을 거룩한 교역이나 교회의 어떤 직무나 임무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그에게 어떤 장소나 지역에서의 거주를 강요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또한 지성한 성찬의 공적 참여를 금지할 수도 있다.
7. 피고소인은 교구/동방교구와 피고소인이 상호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적절한 의료 진단과 정신과 진단을 받도록 요구되거나 자발적으로 순응하도록 재촉 권고할 수 있다.
8. 단 한번일지라도 미성년자 성적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교회법에 의거한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 확증될 경우, 해당 사제나 부제는 영구히 성직 직무에서 해임되며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 처분될 수 있다 (교회법전(CIC), 제 1395조 2항); 동방 교회법전(CCEO), 제 1453조 1항).⁴

A. 교회법적 형벌이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는 교회법 안에 명시된 절차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회법 규정들도 검토되어야 한다 (cf. Canonical Delicts Involving Sexual Misconduct and Dismissal from the Clerical State, 1995; Letter from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May 18, 2001).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사건을 통 고받은후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사건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교구장 주교/동

방주교에게 사건처리 절차를 지시한다(Article 13, “Procedural Norms” for Motu proprio, 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 AAS, 93, 2001, p. 787). 만약 반대로 사건에 대한 부결 처리 지시가 미성년자 성적학대의 심한 손상으로 인해 내려졌을 경우, 주교/동방주교는 죄질의 심각성을 이유로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관련된 사유를 제시하면서 지시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합당한 교회법적 절차를 위해 피고인에게 사법 변호인과 교회법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교구/동방교구가 교회법 변호인을 제공할 수 있다. 형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교회법전(CIC), 제 1722조, 또는 동방 교회법전(CCEO), 제 1473조 규정이 실행되어야 한다.

B. 만약 (고령이나 병약한 이유로)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처분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피고소인은 기도와 속죄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그는 공적으로 거룩한 성찬례와 성사를 거행할 수 없다. 피고소인은 성직자 복장을 입지 못하며 공개적으로 자신을 사제로 소개할 수 없도록 교육 받아야한다.

9. 교구장 주교/동방주교에게는 언제나 **보편 교회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 행위(administrative act)**를 통해 피고 성직자를 직무에서 해임하고, 성사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사제직 수행을 제한할 수 있는 통치 집행권(executive power of governance)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⁵ 성직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적학대는 보편 교회법뿐만 아니라 (교회법전(CIC), 제 1395조 2항; 동방 교회법전 (CCEO), 제 1453조 1항) 미국 사법권에서도 범죄 행위이므로, 공익과 교회법 준수를 위해 교구장 주교/동방주교는 단 한번의 미성년자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제나 부제라도 위에 기술된 대로 현직에 계속 머무르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집행권을 행사해야 한다.⁶

10. 사제나 부제는 언제나 사제직의 의무로부터 관면(dispensation)을 신청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로 주교/동방주교가 해당 사제나 부제의 동의 없이 교황에게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을 주교직 권한으로(ex officio) 요청할 수 있다.

11. 교구/동방교구는 미성년자 성적학대 주장 신고에 대해 적용되는 모든 사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해당 지역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교구/동방교구는 사법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에 대해 조언하고 도와주어야 한다.⁷

12. 미성년자 성적학대를 저지른 사제나 부제는 다른 교구/동방교구 내 교역직무로 전임될 수 없다. 자신의 관할 외 지역으로부터 사제나 부제를 받아들이는 모든 주교/동방주교는 그 사제나 부제의 미성년자 성적학대 과거전력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와 같은 교구/동방교구 사제나 부제가 주거지 이동을 위해 다른 교구/동방교구로 전임을 하기 전에 그의 교구장/동방교구장 주교는 해당 지역의 주교에게 그의 미성년자 성적학대의 그 어떠한 행위에 관한 모든 정보와 그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위험인물이었거나 위험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대외비밀로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수도회 소속 사제가 어느 교구/동방교구 내 공동체로 거주를 위한 전임이 될 경우, 수도회 장상은 지역 교구장/동방교구장 주교에게 이를 통보하고, 교회법과 민법상 허용되는 비밀보장 한도 내에서 그의 미성년자 성적학대 행위에 관한 모든 정보와 그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위험인물이었거나 위험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교구장 주교/동방주교에게 전달하여 주교/동방주교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적절한 안전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데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교구장 주교/동방주교의 법적 권한을 인정하고, 교회법전(CIC), 제 678조, (동방 교회법전(CCEO), 제 415조 1항과 554조 2항), 교회법전(CIC), 제 679조의 규정을 인정하며, 수도회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교회법전(CIC), 제 586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3. 관련된 모든 이들의 권리, 특히 성적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피소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피고소인의 **무혐의가 증명되었을 경우** 무고(falsely accused)로 인해 손상된 그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고

¹ 이 규범들은 미국 내에서 교역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제와 부제들에 관한 교구와 동방 교구, 성직자 수도회와 성직자 사도 생활단을 위한 개별법으로 그 효력을 갖는다. 회의 장상은 이 규범들을 내부 생활과 자치를 위해 적용하고 해석할 때 보편 교회법과 적합한 회헌에 의거하여 행할 의무가 있다.

²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가 외관상으로, 객관적으로 중죄 행위로 판명이 어려울 때는 명망있는 윤리 신학자들의 글을 참조하거나 명망있는 감정인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얻어야 한다 (*Canonical Delicts*, p. 6). 교구장 주교/동방주교는 자격 있는 평가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신고된 행위의 경중을 판단해야 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³ 동방 가톨릭교회(Eastern Catholic Church)의 해당 관할권이 합당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⁴ 전문가에 의해 어린이에 대한 이상성애자(pedophile)로 또는 전문 치료가 요구되는 이상성욕 질병의 진단을 받았든 아니든 간에 해당 성직자는 반드시 사제 임무에서 해임된다.

축성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사제들에 의해 “교회 직무”의 표현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교회법전 제 586조와 732조에 따라 제 678조와 738조가 또한 적용된다.

⁵ Cf. 교회법전(CIC), 제 35-58조, 149조, 157조, 187-189조, 192-195조, 277조 3항, 381조 1항, 383조, 391조, 1348조, 그리고 1740-1747조. 또한 Cf. 동방 교회법전(CCEO), 제 1510조 1항과 2항 1-2호, 1511조, 1512조 1-2항, 1513조 2-3항과 5항, 1514-1516조, 1517조 1항, 1518조, 1519조 2항, 1520조 1-3항, 1521조, 1522조 1항, 1523-1526조, 940조, 946조, 967-971조, 974-977조, 374조, 178조, 192조 1-3항, 193조 2항, 191조, 그리고 1389-1396조.

⁶ 교구장 주교/동방주교는 다음과 같은 행정 행위를 집행하기 위한 통치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회법전(CIC), 제 381조, 129조ff; 동방 교회법전(CCEO), 제 178조, 979조ff.):

a. 주교는 피고소인이 임의로 현재 교회직무에서 사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교회법전(CIC), 제 187-189조, 동방 교회법전(CCEO), 제 967-971조).

b. 피소고인이 사퇴를 거부하고 교구장 주교/동방주교가 현재 피고소인은 이전에 임의 수여로 서임한 (교회법전(CIC), 제 157조) 직무에 요구되는 자격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할 경우 (교회법전(CIC), 제 149조 1항; 동방 교회법전(CCEO), 제 940조), 주교/동방주교는 교회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교회법전(CIC), 제 92-195조, 1740-1747조; 동방 교회법전(CCEO), 제 974-977조, 1389-1396조) 그를 직무에서 해임시킬 수 있다.

c. 교구/동방교구 내에서 어떠한 직무도 수여되지 않는 성직자의 경우, 이전에 수여된 성사권은 행정적으로 회수 될 수 있으며 (교회법전(CIC), 제 391조 1항, 142조 1항; 동방 교회법전(CCEO), 제 191조 1항, 992조 1항), 교회법이 명시한 대로 관할 직권자에 의해 이와 같은 특별 권한이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 (교회법전(CIC), 제 764조; 동방 교회법전(CCEO), 제 610조 2-3항).

d. 교구장 주교/동방주교는 어느 특정한 경우가 처한 사정이 사제가 신자들의 참여 없이 성찬 제헌을 거행해야 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교회법전(CIC), 제 906조). 주교는 해당 사제와 교회의 선익을 위해 그의 성찬 제헌 거행과 성사 집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

e. 사건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교구장 주교/동방주교는 해당 성직자를 성직자 복장을 입는 의무로부터 (교회법전(CIC), 제 284조; 동방 교회법전(CCEO), 제 387조), 관면을 줄 수 있으며 (교회법전(CIC), 제 8588조; 동방 교회법전(CCEO), 제 1536조 1항-1538조) 교회와 자신의 선익을 위해 교회 복장을 입지 않도록 재촉 권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 행위는 문서로 그리고 교령을 통하여 집행됨으로써 (교회법전(CIC), 제 47-58조; 동방 교회법전(CCEO), 제 1510조 2항 1-2호, 1511조, 1513조 2-3항과 5항, 1514조, 1517조 1항, 1518조, 1519조 2항, 그리고 1520조) 해당 성직자가 교회법에 의거하여 소원(recourse)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교회법전(CIC), 제 1734조ff; 동방 교회법전(CCEO), 제 999조ff).

⁷ 교회법 규정의 이행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행 중인

사법행위의 추이에 결코 장애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는 미성년자 성적학대의 범죄 행위에 관하여 모든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는 법을 실행할 고유의 권리에 대하여 재확인한다.

「사제와 부제에 의한 미성년자 성적학대 주장 신고 처리에 대한 교구/동방교구 정책들을 위한 필수 규범」은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의 성적학대 특별 위원회와 공동 위원회에 의해 전개 작성되었고, 2005년 6월 주교총회에서 승인되고 아래의 서명인에게 그 출판이 허락되었다.

Msgr. William P. Fay

사무총장

미국가톨릭주교회의